

공 연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1. 개정 이유

현재 시행규칙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중대한 사고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, 해당 규칙상으로는 최초 사고발생 시점 이후, 상황과악이 최대 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고과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. 이로인해 사고발생후, 적시적인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예정)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공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

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5(중대한 사고의 보고)의 법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은 영 제9조의6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“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”를 “지체없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5(중대한 사고의 보고) 법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은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<u>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전화·팩스·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.	제6조의5(중대한 사고의 보고)----- ----- ----- -----지체없이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